

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 계획

(창조혁신부, '15. 7)

□ 목 적

- 외부 강의·회의등의 신고 실태 점검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의식 제고
- 반부패 활동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공사 문화 조성

□ 근거 규정 :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제29조, 제47조

□ 점검 개요

- 점검 범위 : 2015. 1. 1. ~ 2015. 7.20. 동안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
- 점검 기간 : 2015. 7.27.~2015. 8. 3.
- 점 검 자 : 반부패 청렴 TF
- 점검 방법 : 하이넷 신고 등록사항과 근태자료 등 확인

□ 점검 사항

- 외부 강의·회의 신고 누락 여부
- 외부 강의·회의에 따른 근태의 적정성 여부
- 외부 강의·대가기준 초과 여부
- ※ 점검 대상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, 소명요구 등이 있을 수 있음

□ 결과 조치

-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감사실에 통보하여 환수 등 조치

붙임 : 외부강의·회의 등 신고 안내 1부. 끝.

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 안내

□ 근거 규정 :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

제29조(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)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<별지5>의 “외부강의·회의등 신고서” 양식에 의거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윤리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·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다. 다만, 대학 등 학술단체 이외의 직무관련 강의·강연의 대가는 <별지 5의2>의 “외부강의대가기준”을 초과할 수 없다

<별지 5의2> 외부강의 대가기준

(단위 : 천원/1시간)

구분	사장	임원	1~3급 (전문직 포함)	4급 이하
상한액	400	300	230	120
1시간초과	300	200	120	100

* 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
□ 신고 절차

- HiNet 외부강의등 신고서(116G001SM)화면에서 등록
- 공문 등 관련 서류는 창조혁신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송부 (메일, 우편, fax 등)

□ 유의 사항

- 대가 및 여비 관련
 - 강의료는 통상적 기준을 따르되, 학술단체 이외 강의, 강연의 경우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준수할 것
 - 교통비(여비) 등은 이중수령·지급할 수 없음*
 - * 강의 기관에서 교통비, 여비 등 지급시 출장여비 수령·지급하지 않음
- 복무 관련
 - 겸직동의를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 필요
 - 업무시간 내 외부 강의·회의 등의 경우 근태관리 철저